| 검사법령 제 · 개정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 개정

1. 개정사유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규칙(IBC Code) 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현행 기준의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시행일자: 2007. 1. 1.

3. 주요 개정내용

- 화물구역 통로의 크기. 소방설비 및 가스점검장치의 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탄산가스로 소화가 곤란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 소화장치 요건을 정함
- 화물탱크 등의 재료 요건을 변경함
- 액체화학품폐기물의 해상소각 규정을 삭제함
- 액체화학품의 해양오염분류체계를 5분류 체계에서 3분류 체계로 변경하고, 자일렌 등 106개 물질 운송 선박의 선형 등급을 상향조정함



│ 검시법령 제 · 개정

위험물 운송기준 및 연료유탱크 기준 강화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는 9월 14일 해양오염의 예방 강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은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연료유탱크 와 펌프룸을 이중구조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해양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액체물질의 등급을 조정하고 새로운 유해액체물질도 추가한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부속서 I, I)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350종의 유해액체물질 중 199종의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199개의 새로운 물질이 유해액체물질 에 포함되며, 유해액체물질의 양하 후 최대 잔유물의 기준도 종전의 100~300리터 이하에서 75리터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7년 8월 1일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연료유탱크가 600톤 이상인 선박)은 충돌 및 좌초 시 연료유에 의한 기름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하여야 하고, 재화중량 5,000톤 이상의 유조선은 2007월 1월 1일 이후부터 펌프룸을 이중저로 건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총 41개사의 121척(선사 7개 : 국제항해선박 50척, 선사 34개 : 국내항해선박 71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